

#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 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부서)의 장
람	

## 공 보

<http://www.daedeok.go.kr>

**제2024-9호**  
**2024. 2. 16.(금)**

## 차 례

### 조 례(10)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조례 제1730호) ..... 1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731호) ..... 1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732호) ..... 2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733호) ..... 27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734호) ..... 3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735호) ..... 3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736호) ..... 37
-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737호) ... 4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738호) ..... 45
-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조례 제1739호) ..... 49

### 고 시(2)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고시 제2024-23호) ..... 53
- 도시계획시설사업(연구시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고시 제2024-24호) ..... 54

## 차 례

### 공 고(6)

- 신탄진동 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주민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공고 제2024-195호) ..... 56
- 장동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수립 및 동의서, 주민설명회 개최 반송에 따른 공고(공고 제2024-198호) ..... 58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업소 관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200호) ..... 60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201호) ..... 61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4-202호) ..... 62
- 도로 사용(임시) 개시에 관한 공고(공고 제2024-204호) ..... 65

공 람									
-----	--	--	--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2월 1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30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

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 연서수 및 청구권자 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5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및 대표자증명서 발급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3. 서명요청 기간
-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④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명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 할 수 있고,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 ① 대표자 및 수입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수입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 및 수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동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4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⑥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수입자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
-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

제6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
- 3. 연서주민수
-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 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의회와 대덕구 및 동별 사무소의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구 공보, 구 게시판, 의회 홈페이지,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8조(이의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

른 열람기간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보정기간)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명백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

청과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대표자 변경 등)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을,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 ① 의장은 주민에 대해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사항 및 절차에 관하여 조언·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해 의장에게 법 제4조 각호에 따른 청구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적격 여부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4. 제2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교육·홍보·지원 등 사무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주민조례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input type="checkbox"/> 위 주소에 주민등록된 주민 <input type="checkbox"/>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이상 외국인으로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명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i> <li>○</li> <li>○</li> </ul>	
청구이유		
전자서명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이용 신청 여부	<input type="checkbox"/> 이용신청 <input type="checkbox"/> 이용신청 안함	
정보시스템 대표자 개인정보 공개 범위 선택	▶ 대표자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공개 [ ] 비공개 ▶ 대표자 상세주소 <input type="checkbox"/> 공개 [ ] 비공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청구하며,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대표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위 청구조례안 및 청구권자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 주요내용 및 이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공동대표자용 [ ]청구·[ ]철회·[ ]선정대표자 지정 서식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요내용	○ ○ ○

청구인의 대표자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채류지)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비고
						선정 대표
						선정 대표
						선정 대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조례를 [ ]청구, [ ]철회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회의의장** 귀하

작성방법

- "번호"란에는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작성합니다.
- "주소"란에는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까지 작성합니다.
-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성명을 자필로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거소·채류지)	(전화번호 : )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구인의 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서명할 것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년 월 일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b>대전광역시 대덕구회의의장</b>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10px;"> <span style="border: 1px solid red; padding: 2px 10px;">직인</span> </div>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별지 제6호 서식]

##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채류지)	(전화번호 : )
수입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채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거소·채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수입자에게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위원장 귀하

유의사항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 주민조례청구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청구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채류지)	(전화번호 : )	
수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채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생년월일	
	주소(거소·채류지)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한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위 수입자는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년 월 일</p> <p>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위원장 직인</p>			

청구조례명란에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이의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생년월일
이의대상	( )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신청 취지		
신청 사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장 귀하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란이 부족하면 요지만 적고, 그 내용은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주민조례청구 대표자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변경 전 대표자	성명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생년월일
변경 후 대표자	성명 주소(거소·체류지) (전화번호 : )	생년월일
변경사유		

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변경을 신고하니 처리 바랍니다.

년 월 일

변경 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변경 후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장 귀하

귀하

유의사항

청구명란에는 청구하는 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

## 주민조례청구 철회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조례명	조례의 [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	
주민조례청구서 제출일자	년 월 일	

위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고자 하오니 처리바랍니다.

※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공동대표자용 서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귀하

첨부서류	대표자증명서(수임자가 있는 경우 수임자증명서 포함)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청구조례명란에는 철회하려는 청구조례의 명칭을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주민조례청구 요건, 참여·서명방법, 절차 제도 홍보와 공개의무를 부여함(제2조).
- 나.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의 수를 정함(제3조).
- 다. 주민조례청구서와 대표자 증명서 및 선정 대표자에 대한 사항을 정함(제4조).
- 라. 청구인명부 서명요청 절차와 명부 처리 방법, 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 공표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마. 이의신청 및 보정기간에 대한 사항을 정함(제8조부터 제9조까지).
- 바. 주민조례 청구의 처리 기한을 정함(제10조).
- 사. 주민조례청구의 대표자 변경 및 주민조례청구의 철회 기한을 정함(제11조).
- 아. 주민조례의 입안지원을 정함(제12조).
- 자. 사무협조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3조).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2월 1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31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물품의 무상 대부) ① 구청장은 영 제75조제4호에 따라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무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 소관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

른 북한이탈주민

4.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② 제1항 따른 물품의 무상 대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5조제4호에 따라 경제적  
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소관 물  
품을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물품을 무상 대부할 수 있는 구민의 범위 등을 정함(제14조의2 신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2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3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료(제8조 관련)

1. 기본시설

(단위: 원)

구 분	이용기준	이 용 료			비 고
		평 일	토 · 일 · 공휴일		
강 당	오 전	165,000	198,000		30분 이상 초과 시 이용요금의 25% 추가납부
	오 후	165,000	198,000		
	야 간	198,000	231,000		
체육관 대관	오 전	132,000	165,000		60분 이상 초과 시 이용요금의 50% 추가납부
	오 후	132,000	165,000		
	야 간	165,000	187,000		
체육관 1회 입장료	19세 이상	2,800			대관 및 프로그램 진행시 입장불가
	18세 이하	1,700			
	12세 이하	1,400			
수영장		1회 입장		월 회원	단체: 30명 이상
	19세 이상	4,300 (개인)	3,300 (단체)	62,000	
	18세 이하	2,700 (개인)	2,100 (단체)	48,000	
	12세 이하	2,000 (개인)	1,500 (단체)	39,000	
강의실 (1회)	대덕구청소년어울림센터 /법동청소년문화센터	66,000 오 전	66,000 오 후	77,000 야 간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 수영장 월회원 사용료는 수영강습료(5,000원)를 포함한 금액임.

2. 부속시설

(단위 : 원)

구 분	이용기준	이 용 료	비 고
피 아 노	1회	55,000	
조 명	1회	44,000	
마 이 크	유 선	1개	기본수량 초과시 1개당 5,500 기본수량 : 3개(무료)
	무 선	1개	
비디오프로젝트	1회	55,000	
무대 장치	1회	33,000	
추가 전기	1회	110,000	외부 장비 사용시 1회 공연 기준

※ 횟수는 오전 · 오후 · 야간 각 1회로 보며,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 3. 냉 · 난방

(단위 : 원)

시 설 명	이용기준	이 용 료	비 고
강 당	기본 2시간	121,000	
	추가 1시간	55,000	
체 육 관	기본 2시간	121,000	
	추가 1시간	55,000	
강 의 실	1회	33,000	대덕구청소녀어울림센터, 법동청소년문화센터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 4. 평생교육 프로그램

구 분	월 수 강 료		비 고
	18세 이하	19세 이상	
과목당	4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 재료비, 자격증수수료 등 별도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시설 이용료 감면으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배려와 편의를 도모하여 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를 이용료등의 감면 대상에 신설함(제9조제3항제16호).
- 나.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라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맞게 “만”표시를 삭제함(별표 3).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2월 1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33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5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제6조의 제목 “(비용의 지원)”을 “(지원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제7조 중 “지원을”을 “지원 및 재발방지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대덕구에 거주하는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세부 지원내용과 정신건강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추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협력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보호의무자의 정의에 대해 규정함(제2조제3호).
- 나.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의 근거 법률을 규정함(제5조제7호).
- 다.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내용 및 동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제6조제1항 및 제2항).
- 라. 재발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2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3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제15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4호까지”를 “제15호까지”로 한다.

- 14.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위해 감면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를 이용료 감면 대상에 신설함 (제11조).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  
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2월 1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35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별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하고, 별표 1을 별표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제3조 관련)

구 분	세 부 기 준	비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1. 설치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타 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2. 시설기준 ○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제1호가목1)가)에서 정한 기준의 2배로 한다. ○ 차량 진·출입로가 접한 사업소 부지의 그 한 면이 폭 16미터 이상인 도로와 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허가신청일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1. 설치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타 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2. 시설기준 ○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허가신청일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1. 설치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타 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재량위임한 강화된 세부 허가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완화된 규제로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세부허가기준 중 일부를 완화하여 변경함(별표).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의 부지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의 기준(4m 이상)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완화함.

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기준(별표 1)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충전사업자 영업소의 허가기준(별표 2)을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으로 통합하여 정비함(별표).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2월 1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36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표(제4조 관련)

(단위:원/1구획당)

구 분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1구획 10분 기준)	1 일 주차권	정 기 주 차 권(월)	
	최초 10분	10분초과후 매10분 이내			주 간	야 간
1급지	400	300	600	12,000	140,000	100,000
2급지	300	200	400	8,700	104,000	69,000
3급지	150	150	300	6,500	72,000	43,000
4급지	100	100	200	2,400	43,000	26,000

#### <비 고>

- 이 주차요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적용한다. 다만, 1일 주차권을 발행하는 주차장에서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권 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권 요금을 징수한다.
- 주간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한다.
  - 4월 ~ 10월 08:00 ~ 20:00
  - 11월 ~ 3월 09:00 ~ 19:30
-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다.
  - 1급지 : 해당없음
  - 2급지 : 해당없음
  - 3급지 : 1급지, 2급지를 제외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상 상업 지역 및 준 주거지역
  - 4급지 : 1급지 · 2급지 및 3급지를 제외한 지역
-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율 지역실정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덕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구분하여 징수할 수 있다.
6. 1구획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7. 주차회전율 제고를 위하여 2시간 주차 시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합산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단, 주차의 시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8.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9. 국가유공상이자 및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과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0. 주차시간이 10분 미만일 때에는 이를 10분으로 한다.
11. 1일 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제는 노상·노외주차장 이용지역 여건 및 주차수요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2. 공공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도시교통 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3.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4.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5. 「대전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꿈나무 사랑카드 제시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주차장 안 충전시설을 이용하여 충전하기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9.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반경 200m 이내 상가 이용의 확인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와 상가의 영업주와의 사전 협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협약대상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20. 제13조의4에 따라 설치된 관광버스 전용주차장 1구획의 주차요금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3배를 적용한다. 다만, 지역관광 활성화 및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2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2.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3. 주차요금 감면사유가 여러 종류에 해당 할 경우에는 경감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개정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우대 지원을 확대하여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으로 자원봉사 참여문화 확산 및 사기진작 증진을 위함.

### □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를 공영주차장 이용료의 50% 감면 대상에 신설함(제4조 별표1).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2월 1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37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증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의2호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3조제2항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를 “도로 주행 시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 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가 허용되는 곳(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를 포함한다)에 주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법 제35조 및 제36조 따라 견인·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단으로 방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여 보관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 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로부터 견인·보관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개정이유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라 무단방치가 증가하여 도로통행에 방해가 되므로 무단방치에 대한 견인·보관 조치, 견인·보관에 따른 비용 징수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용어의 인용대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함(제2조).
- 나.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제3조).
- 다.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보관 조치 및 소요 비용을 징수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 정비(제7조).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2월 1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충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38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자전거 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 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 이용의 저변 확대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

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등록단체를 말한다.

6. “전기자전거”란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5조제3항”으로,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구청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의 권장으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관리자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보수하여야 하며,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16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



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

④ 구입비용의 지원 금액은 한 대당 30만원 이내로 한다.

⑤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17조(중전의 제16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현행 조례의 일부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을 지원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함(제5조).
- 나.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에 관하여 규정함(제7조의2 신설).
- 다. 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제16조 신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4년 2월 1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39호

### 대전광역시 대덕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1. 예방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
2.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지원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보건소, 경찰서, 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홍보)**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과 중독의 폐해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정이유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덕구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4조).
- 나.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5조).
- 다.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및 제7조).

끝.

###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과를 고시합니다.

2024년 2월 1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기준점 종류	기준점 번호	전		후		비 고
		평면직각중형선좌표		평면직각중형선좌표		
		X 좌 표	Y 좌 표	X좌표	Y좌표	
도근점	3049	-	-	428623.19	238843.61	세계좌표(신설)
도근점	3050	-	-	428604.05	238943.01	세계좌표(신설)
도근점	3051	-	-	428523.48	238969.31	세계좌표(신설)
도근점	3052	-	-	428444.58	238923.14	세계좌표(신설)
기 준 원 점 명		증부원점				
소 재 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일원				
측 량 년 월 일		2024년 1월 16일				
측 량 성 과 보 관 장 소		대덕구청 토지정책과				
비 고		-				

끝.

### 도시계획시설사업(연구시설)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국방기술품질원장이 대덕구 고시 제2016-73(2016.11.10.)호로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사업 완료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연구시설)에 대하여 시험동 증축을 위한 실시계획(변경) 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과(☎042-608-510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4년 2월 1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상서동 842번지 일원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류: 도시계획시설사업(공공·문화체육시설/연구시설)
  - 2). 명칭: 광학전자부품 시험동 건립공사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명: 국방기술품질원
  - 2). 주소: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20(충무공동)
- 사업의 면적 및 규모(변경)
  - 1). 면적: 97,043.6㎡
  - 2). 사업의 규모

○ 토지이용계획

구분	대지면적	건축부지	도로 및 주차장	체육시설	광장부지	조경부지	자연녹지
기정	97,043.60	4,141.60	6,378.76	-	2,843.02	14,302.27	69,377.95
변경		5,382.42	7,844.40	-	3,383.13	11,319.19	69,114.46

○ 건축물 건축

구분	구분	기 존	금회공사분	합 계	
축	건축면적	4,141.60㎡	1,240.82㎡	5,382.42㎡	
	연면적	11,757.09㎡	1,225.56㎡	12,982.65㎡	
	용적률 산정 용면적	8,595.00㎡	1,225.56㎡	9,820.56㎡	
모	건폐율	4.27%	1.28%	5.55%	법정:20%이하
	용적률	8.86%	1.26%	10.12%	법정:80%이하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고시일로부터 24개월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관계도서: 게재생략.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195호

- (가칭)신탄진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가칭)신탄진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입안 제안된 (가칭)신탄진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관계 도서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공고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재개발정비사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정비구역 지정

가. 구 역 명: (가칭)신탄진동1구역 재개발정비구역

나. 사업명칭: (가칭)신탄진동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다.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 170-8번지 일원

라. 면 적: 55,370.2㎡

2. 정비계획 내용

가. 정비계획 및 면적(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계		55,370.2	100.0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55,370.2	100.0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계		55,370.2	100.0	
공동주택용지		40,552.8	73.2	공공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철도시설		111.6	0.2	존치시설
정비기반시설	소 계	14,705.8	26.6	
	도 로	4,103.4	7.4	
	주차장	638.0	1.2	
	공 원	7,802.4	14.1	
	완충녹지	2,162.0	3.9	

-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에 관한 사항: 공람도서 참조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공람도서 참조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공람도서 참조  
 마.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공람도서 참조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제1항제6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 공람도서 참조

3. 공람기간: 2024. 2. 16. ~ 2024. 4. 1.

4. 공람내용: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 등에 관한 사항

5. 공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 장소

가. 대덕구청 공동주택과(본관 1층) ☎ 042)608-4183, FAX 042)608-3830

나. (가칭)신탄진동1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 042)936-028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772. 2층

6. 주민설명회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2024. 3. 15. 14:00 ~ 15:00

나. 장 소: 대덕구 신탄진동 새어울커뮤니티센터 (대덕구 신탄진동로35번길 21)

다. 참석대상: (가칭)신탄진동1구역 재개발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7. 기타사항

본 정비계획 결정(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은 관계 법령에 따른 정비계획 결정(변경)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공람장소에서 무단으로 공람도서를 복사하거나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198호

## 장동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수립 및 동의서, 주민설명회 개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7조에 따라 장동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실시계획 알림, 동의서 제출 안내 및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주소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대상: 장동3지구 토지소유자 7명
2. 공고기간: 2024. 2. 16. ~ 2024. 2. 29. (14일간)
3. 공고장소: 대덕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 기간 동안 연락이 없을 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동의서 징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문의 사항은 대덕구 토지정책과(☎042-608-5972, 5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 공시송달 조서

연번	토지소재		소유자 정보		발송구분	공시송달 사유
	동	지번	성명	송달주소		
1	장동	203-5	송*섭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1로 15, *동 ***호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반송불능 (기타)
		204-5				
		208-1				
		208-6				
2	장동	399-4	송*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아리랑로 211, * **동 ***호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반송불능 (기타)
		400				
3	장동	341	송*섭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로278 번안길 **~**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반송불능 (수취인불명)
		341-1				
4	장동	223-2	송*섭	세종특별자치시 누리로 27, ***동 ***호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반송불능 (폐문부재)
		234-1				
		235-1				
		236-1				
5	장동	139-1	최*진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로761번길 24, ***동 ***호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반송불능 (기타)
6	장동	407	박*애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서로20번길 **, ***호	실시계획 수립 및 동의서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반송불능 (기타)
7	장동	239-2	송*영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 ****~*	실시계획 수립 및 동의서 주민설명회 개최 안내	반송불능 (주소불명)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4-200호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식품위생교육)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4년 2월 1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공고기간: 2024. 2. 16. ~ 2024. 3. 4.
- 근거법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3조(교육), 제47조(과태료)
- 게시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관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게시관
- 행정처분 공고 내용
  - 처분의 제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태료부과  
나. 대상업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남로40번길 83, 302호 (중리동) / 희망(최\*\*)
  - 처분 사유: 2021년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안전위생교육 미이수
  - 처분 내용: 과태료20만원(기한 내 납부시 16만원)
- 의견제출
  - 제출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위생과 식품유통팀(대전로1033번길 20, 위생과)
  - 의견제출기한: 2024. 3. 4. (월)
- 유의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상기 공고와 관련 사항은 대덕구청 위생과 식품유통팀 ☎(042)608-69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청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 폐업(말소)에 따른 영업자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한 직권말소에 정사항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고기간: 2024. 2. 16. ~ 2024. 2. 29.(14일간)
2.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제37조제7항
3. 행정처분(직권말소) 공고내용

업종	업소명	위반자명	소재지 주소	위반사항	처분 내용
일 반 음식점	동죽북경짬뽕	임○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385, 2층 (읍내동)	사업자등록 폐업 (말소) 2016. 12. 31.	직권말소

4. 고지사항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 2월 29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본 처분에 대한 문의: 위생과 위생관리팀 ☎(042)608 - 6902. 끝.

##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8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근거  
가.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68조  
나. 공시송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기 간: 2024. 2. 16.(목) ~ 3. 1.(금) (14일간)
4. 공고대상: 불임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대덕구 자원순환과(☎042-608-6834)에서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독촉고지서의 경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 및 이후 매월 1.2%의 증가산금(최대 60개월)이 부과되며, 납기 내 미납 시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따라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있으니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또한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덕구 자원순환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이의제기서는 관할 법원에 통보되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될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위 기간이 도래하면 사전통지서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 의 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순환과(☎042-608-6834) 끝.

[별첨1]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내역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부과금액(원)	반송사유
정*대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68번길 18, ***호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200,000	폐문부재

끝.

### 도로 사용(임시) 개시에 관한 공고

「도로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도로 사용(임시) 개시 구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6일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가. 도로의 종류: 국지도로
- 나. 노선번호·노선명: 소로1-와동2호선(B=10m, L=460m)  
중로3-279호선(B=12~15m, L=239.6m)
- 다. 사용개시 구간: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48-4번지 ~ 와동 383-4번지 일원
- 라. 주요통과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와동 39번지 일원
- 마. 사용개시일: 2024. 2. 19. ~ 2024. 2. 29.
- 바.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설과
- 사. 유지관리자: 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아. 위치도: 붙임 참조

※ 비고: 주민편의와 공동주택의 원활한 입주 지원을 위해 진출입부 연결도로 사용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준공도로 이관 전 임시사용

### 위치도



끝.